

세계아동의 해와 우리의 아동복지 방향

이 . 옥 . 순 (보사부 부녀아동국장)

一. 序 言

1976年度에 開催된 第20次「유엔」總회는 ‘유엔 어린이 權利宣言’ 20周年이 되는 1979年을 ‘世界兒童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Child, 略稱 IYC)로 宣布키로 決定하였다.

對內的으로 1979年은 우리 政府가 社會開發을 主要政策指標로 삼고 福祉社會의 具現을 통한 國民民福에 力點을 두고 있는 第4次 經濟開發 計劃期間의 셋째 해인 同時에 70年代를 마무리 짓는 해이기도 하여 우리는 이 해에 特別한 意味를 賦與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兒童福祉面에서 우리가 이 해를 重要하게 생각하는 것은 ‘世界兒童의 해’를 맞이하여 從來의 우리의 兒童福祉事業을 再檢討함으로써 앞으로 發展의이며 보다 積極인 兒童福祉施策과 方向을 講究하는 契機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兒童福祉라 하면 그 範圍가 廣大하며 時代的 背景과 社會現象들과 關聯시켜 다루어야 할 分野이므로 어느 한 部分의 제도적 裝置나 施策面으로는 그의 完壁한 實效를 期待하기 어려운 問題라 할 수 있다.

어느 社會를 막론하고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싹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겨 향상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돌보고 보살피므로써 將次 國家와 民族을 위해, 그리고 人類의 共榮을 위해 이바지하는 健全한 國民으로 키워야함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이러한 精神과 趣旨에서 우리는 일찌기 1957年 5月 5日 어린이날을 契機로 ‘大韓民國 어린이 憲章’을 制定하여 어린이를 사랑하고 健全하게 育成하기 위한 國民的 行動規施을 對內外에 淸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우리 現實은 緊急한 當面課題들을 解決해 가는 데 몰두한 나머지 人間의 價値와 眞理를 追求하고 生活의 眞正한 意義를 찾으며 다음 世代의 權益과 福祉向上을 위한 努力에 있어 未洽한 점이 없지 않았다.

生活에 쫓겨 子女들과 對話조차 할 餘裕가 없는 現代의 父母들, 一流學校에 進學시키는 것을 至上의 課題로 생각하는 그릇된 思考, 生活에 조금 餘裕가 있다고 無節制한 浪費를 일삼는 侈奢風潮,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既成世代의 無關心과 虛慾 등 어린이와 靑少年들의 健全한 成長과 發育을 阻害하는 現實狀況이 社會一角에 남아 있는 것이 事實이며, 이와 같은 점이 改善되지 않고서는 眞正한 兒童福祉와 靑少年 善導를 期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人格形成過程의 어린이에 대한 人性教育, 그리고 건전한 思考力과 意識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일은 오늘과 같은 複雜한 社會構造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는도 重要한 일이며 이것은 家庭과 學校 그리고 나아가서 社會와 國家가 緊密한 協力하에 共同으로 遂行해 나가야 할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本稿은 1979年 世界兒童의 해의 設定 趣旨와 우리나라가 推進하고 있는 記念事業計劃을 紹介하고 아울러 우리의 兒童福

특집 : 세계아동의 해와 간호사업

社施策과 그 政策方向에 대해 言及해 보고자 한다.

二. 世界兒童의 해 記念事業

1. 兒童의 해 設定趣旨

가. 背景 및 目的

1959年 11月 20日에 宣布된 ‘유엔 어린이權利宣言’은 그 前文에서 “...人類는 그가 가진 最善의 것을 어린이에게 줄 義務를 가졌으므로 유엔 總會는 어린이가 幸福하게 자라나며 그 自身의 善과 社會의 善을 위하여 여기에 規定된 權利와 自由를 즐길 수 있게 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또한 兩親, 個人으로서의 男女, 民間團體地方行政機關 또는 中央政府에 대하여 다음에 規定한 諸原則에 따라서 正式法律으로써 또는 其他의 積極的手段으로써 이 모든 權利를 認定하고 遵守할 것을 要求하기 위하여...”라고 그 趣旨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1976年의 第31次 유엔 總會는 유엔 어린이權利宣言 20주년인 되는 1979年을 ‘세계 아동의 해’로 하기를 결정하고 세계의 모든 國家가 자기 나라의 兒童福祉增進을 위한 諸般事業들을 檢討하여 自國의 實情에 맞는 福祉施策을 積極적으로 펴 나가는 契機로 活用하고 특히 兒童福祉를 위한 投資는 經濟開發의 投資와 같은 次元에서 다루도록 認識을 새롭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專擔機構의 設置運用

이 運動을 效果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엔은 국제연합 아동기금(UNICEF) 내에 ‘世界 兒童의 해’ 專擔事務局을 設置하고 한 때 필리핀 保健省長官을 지낸바 있는 Dr. Aldaba-Lim 女史를 特別代表로 임명하는 한편, 各國으로 하여금 記念事業을 위한 國家委員會 또는 專擔機構를 設置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78年 7月 15日에 大統領令(第9091號)으로 世界兒童의 해 記念事業推進委員會規程을 制定公布한 바 있으며 保健

社會部長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關係部處의 次官과 各界人士 20名으로 委員會를 構成하여 이 해에 우리가 推進할 記念事業을 協議, 調整하기 위한 專擔機構의 組織을 完了하였다.

2. 記念事業計劃의 基本方針

1978年 11月 15日에 第一次 記念事業推進委員會는 各部處와 民間社會團體로 부터의 事業計劃과 意見を 綜合하여 우리나라의 記念事業計劃을 確定하였다.

委員會가 確定한 記念事業推進의 基本方針은 첫째, 社會가 兒童保護에 關心과 責任感을 갖도록 유도하며 政府나 民間이 共同으로 兒童福祉增進에 더욱 힘쓰도록 하고

둘째, 이를 위해서 各種記念事業과 기념行事를 政府와 民間次元에서 活潑하게 展開하여 어린이 愛護思想을 鼓吹하며

셋째, 兒童福祉에 대한 一般國民의 關心을 提高하기 위해서 兒童의 해 理念과 記念事業 內容을 國民에게 널리 周知시키고

넷째, 國際會議와 行事에 積極 參與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交流를 促進함으로써 國家間의 友誼를 增進하여 兒童의 해가 名實相符한 汎世界的인 兒童福祉增進의 契機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3. 記念事業의 內容

이와같은 基本方針에 따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政府와 民間을 44個 團體에서 總 280件의 各種 記念事業과 行事를 計劃하였으며 그 중 5月末 現在 全體의 約 40%인 117件의 事業 및 行事를 推進하여 어린이 愛護思想의 鼓吹와 弘報 및 國際交流를 促進한 바 있는데 全般의 重要 事業內容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記念行事로서

1) 금년도 제57회 어린이날 記念行事는 從來와 달리 中央과 地方單位에서 大々的으로 舉行하여 兒童事業有功者와 善行어린이를 表彰하고 不遇한 어린이를 위한 慰勞잔치를 베풀어 어린이 愛護思想을 일깨우며

2) 各機關과 團體에서 音樂會, 美術大會, 글짓기, 雄辯大會 등 學藝行事와 體育競演大會를 全國規模로 實施하며

3) 民間社會事業團體가 主管하는 아동의 紀念 誌기大會를 통한 募金活動을 全國적으로 展開하여 不遇한 아동을 돕고 어린이 餘暇善用 施設을 확충하는데 活用하며,

4) 紀念우표와 紀念貨幣를 발행하여 兒童의 趣旨를 國民에게 널리 周知시키는 것 등이다.

둘째, 紀念事業으로서는

1) 長期計劃事業으로 79年度부터 81년까지 年次的으로 各 市郡區에 1個所씩의 母子保健센터를 設립하여 임신부등록 관리와 幼兒營養指導, 託兒所運營事業을 맡게 하고

2) 女性團體에서는 玩具, 食品, 衣服 등 兒童用品 展示會를 서울을 비롯한 主要都市에서 開催하여 어린이에 대한 保護意識을 일깨우며

3) 예방접종, 무료진료와 탁아소 및 학교를 통한 영양급식, 영양개선 시범마을의 育成으로 어린이들의 保健과 營養增進을 도모하고

4) 學校生活指導의 充實化와 特殊教育의 振興을 기하며

5) 心身障敝兒童들의 福祉對策으로서 障敝者 實態調査의 實施, 營養給食, 再活 및 職業訓練을 強化하여 健全하게 社會로 復歸시키며

6) 各種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既存 兒童事業을 評價하고 장래의 事業方向을 講究토록 한다.

이밖에 弘報活動 및 國際交流의 促進事業으로

1) 어린이 애호사상의 고취와 어린이의 보건, 영양, 교육, 후생 등 福利增進을 내용으로 하는 各種 弘報資料를 제작하여 國內外에 알리고 아동의 海 象徴마크를 活用, 기념상품과 各種標識을 製造하여 아동의 海의 뜻이 널리 鼓吹되도록 하며

2) 國內外의 募金活動을 통해 아프리카 등 低開發國을 돕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紀念事業計劃은 그동안 아동의 海

에 즈음한 國務總理談話文 發表 등 政府의 強力한 뜻과 言論을 비롯한 民間社會團體들이 앞장 서서 적극 協조하여 좋은 成果를 이룩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량이 더욱더 늘어날 추세에 있으나 바라건대 이같은 계획들이 今年 한해의 사업이나 단순한 행사에 그쳐서는 안되고 이를 계기로 우리 兒童福祉의 百年大計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轉機를 마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계기관, 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아동의 海의 취지를 이해하고 거국적인 참여와 協조가 있어야 하겠다.

※ 참고로 各國의 IYC 사업참여 현황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IYC 참여 현황

- 전담기구의 설치국 : 한국 등 147개국
- 비참가국 : 뉴기니아 등 7개국
- 미상국 : 솔로몬군도 등 12개국
- 기념 주화 발행국 : 인도 등 7개국(한국은 UN과 협의중)
- IYC 표식 사용국 : 한국 등 9개국
- 장애아동 사업 실시국 : 스웨덴 등 19개국 (한국 포함)
- 기념우표 발행국 : 한국 등 35개국
- 아동 권리에 관한 입법 및 연구회의 개최국 : 인도네시아 등 38개국
- IYC 명예총재(patron) 설정국 : 영국 등 36개국

2. 各國의 명예총재(patron) 현황

- 왕 및 대통령급 : 20개국
 - 부탄, 네판, 스페인, 영국, 베린, 핀란드, 기니아, 인도네시아, 케냐, 리베리아, 말라위, 말리, 말타, 파키스탄, 토 오고,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 왕비, 공주 및 영부인급 : 11개국
 - 칠레, 에집트, 그리스, 이란, 이스라엘, 모나코, 페루, 필립핀, 사모아, 터키, 베네수엘라
- 수장 및 각료급 : 5개국

특집 : 세계아동의 해와 간호사업

—인도, 자마이카, 뉴질랜드, 스리랑카,
에네

三. 우리의 兒童福祉

兒童福祉의 개념은 여러가지로 定義할 수 있으나 一般的으로 兒童福祉사업이 追求하는 목표는 兒童이 健全하고 幸福하게 출생하며 育成되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아동과 그 家庭이 필요로 하는 資源과 보호를 제공하는 제반활동을 통하여 아동의 福利증진과 健全가정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바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아동복지사업은 政府와 민간단체에서 각각 수행되고 있지만 그중 정부의 역할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단위기관으로써 보다는 아동복지를 위해 國家的 次元에서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측면이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우리의 아동복지의 現況과 그 사업방향을 살펴본다.

1. 兒童福祉行政의 現況

가. 기본방향

우리의 아동복지행정적 기본방향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아동복지 및 애호사상을 고취하고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환경을 정화하며 아동休養시설의 증설을 촉진하고 사전예방적 복지사업의 개발을 통해 아동복지의 증진을 도모한다.

둘째, 아동상담소의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사업요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상담지도로 要보호 아동의 발생을 예방한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의 적정배치와 시설보호아동의 生計보호를 철저히 하고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이들을 가정과 사회로 건전하게 복귀시킨다.

나. 아동복지행정적 대상

1) 兒童人口

아동에 대한 연령한계는 사회적 통념과 각종

단행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現行 兒童福利法에는 18歲 미만의 者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0~19세의 아동 및 청소년 인구는 1975년 현재(경제기획원 인구조사) 총인구의 50.9%를 점하는 17,948천명이었으나 1981년에는 44.9%인 12,440천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회부양계층인 0~14세의 연소인구는 1975년의 13,614천명에서 1981년에는 12,960천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 요보호 아동 현황

1978년도 0~19세의 추계인구 17,809천명의 1.14%인 20만 2천여명이 보호기관이나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가정의 생계가 곤란한 要보호 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3) 아동복지시설 현황

이들을 수용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大體하면 무의무탁한 요보호 아동을 수용 보호하는 시설과 탁아와 여가선용시설 등 비수용 아동시설로 나눌 수 있다.

1978년말 현재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아동은 총 993箇所의 시설에서 76,313名の 아동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중 606개소의 탁아시설을 제외한 387개소의 시설에서 35,207名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증대와 가정환경의 변화가 현저해졌고 또한 각종 사회공해 등이 兒童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큰 要因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餘暇善用施設, 託兒施設, 相談시설과 같은 적극적인 아동복지시설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다.

2. 78年度 주요사업 추진현황

가. 불우아동의 발생예방 및 상담지도

전국 17個 公私立 아동상담기관의 운영을 강화하고 各市道에 있는 295名の 아동복지지도원과 區市邑面 단위의 아동위원 23,600여명의 兒

児童事業要員들이 78년말 현재 23,300件的 상담지도를 통해 불우아동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설아동의 가정과 사회로의 건전한 복귀를 촉진하였다.

나. 불우아동 건전육성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을 사회각계 인사와 결연케 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생계비 및 교육비를 지원받는 불우아동 결연운동은 지난 76년 불우아동의 국내 자력보호원칙에 입각한 건전육성정책의 하나로 시작하여 금년들어 4년째 실시중인데 지난 78년말 현재 23,560명의 결연실적을 이룩하였으며 이들 아동에 대한 지원액만도 연간 1,33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한계연령인 18세가 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1,300여명의 成長孤兒에게 技能訓練을 실시 각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직장주기 운동도 지난 한해동안 당초 계획인원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지양하며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종래 施設보호와 國外家庭에 入養해 오던 불우아동의 보호방식을 국내가정에 入養 가정양육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76년에 입양特例法을 제정, 새로운 국내입양기관을 설치하여 78年 中에는 3,522名の 아동을 국내 가정에 입양시켰다.

3. 앞으로의 시책방향

가. 目 標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복지증진과 健全家庭의 육성을 도모한다.

나. 推進方針

1) 1979년 세계아동의 해를 계기로 각종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린이 애호사상을 고취함으로써 아동복지증진의 기반을 구축한다.

2) 兒童事業要員의 적극 活用과 상담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要保護兒童의 발생을 예방한다.

3) 心身障礙兒의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영양급식을 실시하고 장애회복을 위한 치료와 직업훈련을 적극 실시하며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복지대책을 수립, 이들이 능력에 따라 건전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도록 한다.

4)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결연사업을 79년 中에는 25,000名을 목표로 확대 실시하며 성장고아 직장주기 운동(금년 대상아동 1,068名)을 적극 전개하고 국내가정입양(금년목표인원 : 3,500名)을 촉진한다.

다. 間期的 事業方向

우리의 아동복지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방향은 첫째, 치료적 사후처리적 사업체제를 탈피하여 예방적 개발적 사업을 지향하고

둘째, 아동과 청소년복지의 根幹이 되는 상담기구의 확충을 통해 복지사업의 전문화를 기하여야 하며

셋째, 一般收容시설을 심진장애아의 재발을 위한 특수시설이나 사회의 수요가 요청되는 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넷째, 시설수용아동의 보호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이들을 가정과 사회로 건전하게 복귀토록 하며

끝으로 아동을 위한 여가선용시설을 확장하여 즐거운 일상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각종 소년범죄와 비행을 예방하도록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강구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兒童福祉에 대한 個個의 個別要求와 사회의 통합요구가 정책의지에 의해 훌륭한 제도과 시책으로 化하여 적극적인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떠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